

충청북도중학교및고등학교배정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

1998. 7.22
교육사회위원회

1. 제안자 : 충청북도교육감 제출

2. 제안및회부일자

- 제안 : 1998년 7월 14일 제출
- 회부 : 1998년 7월 14일

3. 제안이유
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제정시행에 따라 본 조례를 합리성이 부여되도록 개정하고자 함

4. 주요골자

- “교육법시행령 제71조 및 제112조의8제3항”을 “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71조, 제73조, 제81조 및 제92조”로 함 (안 제1조)
- “교육법시행령 제112조의8제1항”을 “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제2항”으로 함 (안 제2조)

5. 검토의견

상위법령인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상의 근거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

상위법개정(98.2)후 조례개정(98.7)의 자연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할 것임